

# 「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3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인구과밀로 인한 이반장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군 및 읍면에서의 행정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아울러 면 행정의 주민지원 폭을 넓히고 현장중심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리 분리
- 향후,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, 과도한 리 분리 및 신설을 억제하여 행정능률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리분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
-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개정(2009.4.1)에 따라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인구과밀 지역의 보다 효율적인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추진을 위해 행정 리 분할 및 신설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

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행정 리의 설치기준을 세대수 및 인구수로 세분화 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
- 현재 188개의 행정리 중에서 하진부 1리와 6리를 각각 하진부 10리와 11리로 분할하여 190개 행정리로 증설하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근거하면서 행정리 분할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- 다만, 금번 신설되는 하진부 10리와 11리의 경우 주민동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